

## ●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- 319호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2월 9일

금융위원회

###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」 제정규정(안)」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금융실명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복수의 비대면 실명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출신청 또는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절차에도 비대면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본인확인절차에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  
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함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전자금융과, 전화 (02)2156-9931 / 팩스 (02)2156-9486, 이메일 leo00@korea.kr)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(주소 : 100-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별지)

##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제정규정안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 
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「금융  
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  
방법을 말한다

### 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